



살생물제품 표시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2. 6.]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39호, 2026. 2. 6.,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화학제품관리과), 044-201-6804, 6827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살생물제품의 표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살생물제품을 구매·사용하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표시면"이란 제품의 겉면에 글자, 그림문자 등을 표시할 수 있는 표면을 말한다. 다만, 통상적으로 소비자가 보기 어려운 제품 용기의 바닥, 손잡이 등 연결부위 및 용기의 위·아래 부분의 오목하거나 볼록한 표면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포인트"란 한국산업표준 KS A 0201(활자의 기준 치수)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활자의 크기를 표시하는 단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하는 살생물제품은 법 제20조,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제품승인을 받거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살생물제품에 한한다.

제4조(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① 살생물제품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은 별표 1과 같다.

- ② 제1항에 따른 살생물제품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의 예시는 별표 2와 같다.
- ③ 살생물제품을 포장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른 표시의 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6-39호,2026.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용기나 포장 및 첨부문서는 재고 소진 시까지 해당 살생물제품의 제조에 사용할 수 있다.

[별표 1] 살생물제품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별표 2] 살생물제품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의 예시

[별표 3] 살생물제품 승인번호 부여기준

살생물제품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제1장. 살생물제품의 표시사항

1. 살생물제품은 제2호 각목에 따른 표시사항의 명칭과 이에 해당하는 표시사항의 내용을 제2장. 살생물제품의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2. 표시사항의 명칭
 - 가. 제품명
 - 나. 살생물제품유형
 - 다. 유통기한
 - 라. 중량·용량
 - 마. 효과·효능
 - 바. 사용대상자 및 사용범위
 - 사. 제조·수입자 정보
 - 아. 어린이보호포장의 표시(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제품에 한함)
 - 자.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성분)
 - 차. 제품 유해성·위험성
 - 카. 사용량·용법
 - 타. 사용상 주의사항
 - 파. 응급처치
 - 하. 보관 및 폐기방법
 - 거. 승인번호
 - 너. 제조번호

제2장. 살생물제품의 표시방법

1. 표시의 일반사항

가. 한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자나 외국어를 함께 표시하는 경우 한글 활자의 크기를 한자나 외국어 활자의 크기보다 크게 표시하여야 한다.

나. 표시는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로 인쇄하거나 새기거나 눌러 찍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표시사항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떨어질 우려가 없어야 한다.

다. 표시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일부 표시사항의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새기거나 눌러 찍는 등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제품승인 후 통지된 살생물제품 정보와 다른 내용의 표시사항(사용방법을 오인할 수 있는 그림 또는 문구 등)을 제품에 기재해서는 아니 된다.

마. 법 제3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34조제1항과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표시·광고가 금지된 문구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은 제품 겉면·포장 등에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바. 법 제10조제8항 및 시행령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제2항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경우, 의미가 중복되는 표시사항 및 표시내용은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사용량·용법 등에 따른 효과·효능이 달라지는 경우 명확하게 구분하여 제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사.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제품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

도록 다음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표시할 것을 권장한다.

- 1) 시각장애인의 올바른 제품 사용을 위하여 제품명, 살생물제품유형, 살생물제품 승인번호 등의 표시사항을 점자 등의 방법으로 병행하여 표시
- 2) 살생물제품의 유해성·위해성 및 안전사용방법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정보망과 연결할 수 있는 전자라벨 등 표시
- 3) 어린이의 삼킴 및 중독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제품에 식품관련 도안 및 만화캐릭터의 표시 자제

2. 표시 위치

가. 제품 겉면의 표시

- 1) '제1장'에 따른 표시사항은 제품(제품을 사용하기 위한 별도의 용기도 포함한다) 겉면의 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 2) 표시면 최상단에 "살생물제품 유형"과 "승인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3) "제품명"과 "성분", "효과·효능", "사용대상자 및 사용범위", "사용량·용법" 등의 제품 사용 정보와, "제품 유해성·위험성"과 "사용상 주의사항", "응급처치", "보관 및 폐기방법" 등의 유·위험성 정보를 구분하여 표1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상표, 로고 등과 같은 면에 인쇄되어 제품 구매 시 통상적으로 소비자가 볼 수 있는 면에 표시된 사항은 중복으로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표1. 표시사항에 따른 표시위치

표시사항	표시위치
① 살생물제품 유형	정보표시면의 최상단
② 승인번호	“살생물제품 유형” 하단 또는 측면
③ 제품명	순서에 관계없이 그룹화하여 표시 (제품의 사용 정보 관련 표시사항)
④ 성분	
⑤ 효과·효능	
⑥ 사용대상자 및 사용범위	
⑦ 사용량·용법	
⑧ 제품 유해성·위험성	순서에 관계없이 그룹화하여 표시 (제품의 유·위험성 정보 관련 표시사항)
⑨ 사용상 주의사항	
⑩ 응급처치	
⑪ 보관 및 폐기방법	
⑫ 어린이보호포장의 표시	상표, 로고 등이 인쇄된 표시면
⑬ 종량·용량	임의 배치
⑭ 제조·수입자 정보	
⑮ 유통기한	
⑯ 제조번호	

4) 1)부터 3)까지의 본문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품 겉면의 표시면 면적이 좁아 표시사항을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표2에서 정하고 있는 표시사항만을 표시할 수 있으며, 나머지 표시사항은 첨부문서 또는 제품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표2. 표시면의 면적에 따른 표시사항

표시면의 면적	표시사항
50 cm ² ~ 100 cm 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명 • 살생물제 품유형 •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성분)^{주1)} • 어린이보호포장의 표시(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제품에 한함) • 제품 유해성·위험성(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 살생물제 품의 승인번호 • “동봉된 첨부문서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문구
50 cm ²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명 • 살생물제 품유형 • 어린이보호포장의 표시(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제품에 한함) • 제품 유해성·위험성(그림문자에 한함) • 살생물제 품의 승인번호 • “동봉된 첨부문서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문구

주1)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중 살생물물질(명칭, 배합비율)을 제외한 나노물질, 인체등유해성물질 및 중점관리물질 등 승인통지서에 제품 겉면 또는 포장 등에 기재하도록 하는 물질은 제품 겉면의 표시면이 아닌 첨부문서 또는 제품 포장에 표시할 수 있다.

나. 제품 겉면 이외의 표시

1) 제품 겉면에 표시된 표시사항이 포장^{주2)}에 가려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제1장’에 따른 표시사항을 제품 포장의 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주2) ‘포장’이란 제품 겉면을 보호하거나 둘러싸는 것으로서 소비자에게 일반적인 조건 하에서 판매 또는 유통 시 보여지는 포장을 말한다.

2)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품 포장의 표시면 면적이 좁아 표시사항을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표2에서 정하고 있는 표시사항만을 표시할 수 있으며, 나머지 표시사항은 첨부문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3) 제품이 고품으로 그 자체가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 또는 제품 내용량이 작은 제품 등 제품 겉면에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1장’에 따른 표시사항을 제품 포장의 표시면 또는 첨부문서에 표시할 수 있다. 다만, 포장이 없는 경우에는 표시사항이 기재된 라벨(Label) 또는 꼬리표(Tag) 등을 사용하여 부착할 수 있다.

4) 제품이 다른 완제품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확인

이 가능하도록 최종 완제품 겉면의 표시면이나 제품설명서 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 활자 크기

‘제1장’에 따른 표시사항을 표시함에 있어 활자의 크기는 표3에서 정하고 있는 표시면의 면적에 따른 표시활자의 크기로 표시하여야 한다.

표 3. 표시면의 면적에 따른 표시활자의 크기

표시면의 면적	활자 크기
200 cm ² 이상	8 포인트 이상
200 cm ² 미만	6 포인트 이상

3. 표시사항별 표시방법

가. 제품명

제품명은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이하 “승인통지서”라 한다)에 기재된 살생물제품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나. 살생물제품유형

살생물제품유형은 승인통지서에 기재된 살생물제품유형을 제품의 표시면 최상단 중앙에 바탕색과 구분되는 색상으로 “살생물제품”이라는 글자와 함께 두꺼운 활자로 글상자 안에 표시하여야 한다. (예.

살생물제품(살균제)) 이때, ‘살생물제품유형’이라는 표시사항의 명칭은 생략할 수 있다.

다. 유통기한

1) 유통기한은 승인통지서에 기재된 유통기한의 실제 연월을 “○○년○

○월”, “○○○○년○○월”, “○○.○○.(연.월.)”, “○○○○.○○.(연.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2) 제조연월을 사용하여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월”까지 또는 “제조일로부터 ○○○년”까지로 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조연월은 제품이 제조된 실제 연월을 “○○년○○월”, “○○○○년○○월”, “○○.○○.(연.월.)”, “○○○○.○○.(연.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 수입제품에 표시된 수출국의 유통기한이 1)과 2)의 본문 규정과 다를 경우에는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연월일”의 표시 순서 또는 읽는 방법을 예시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4) 제품의 사용 또는 보존에 특별한 조건이 필요한 경우 이를 유통기한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5) 유통기한을 제품 겉면의 표시면에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위치에 유통기한의 표시위치를 명시하거나, “별도표시” 등의 안내문구로 대신할 수 있다.

라. 중량·용량

포장단위별 중량·용량의 표시는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7조에 따른 법정 계량단위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티슈형, 고체형 등은 매수 또는 제품 개수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품의 중량·용량·매수·개수 등은 승인통지서에 기재된 제품의 정보와 동일하여야 한다.

마. 효과·효능

효과·효능은 승인통지서에 기재된 효과·효능 내용에 따라 표기하고, 표적생물체(또는 대표 종) 및 작용 기작 등을 기재해야 한다.

바. 사용대상자 및 사용범위

사용대상자 및 사용범위는 승인통지서에 기재된 사용대상자 및 사용범위를 표시하여야 한다.

사. 제조·수입자 정보

- 1) 제품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 또는 성명, 주소 및 연락처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때, 표시사항의 명칭 및 내용은 제조 또는 수입에 해당하는 내용에 따라 선택하여 표시할 수 있다. (예, [제조자 정보] (주) 서울, 서울특별시 ○○○, 02-000-0000)
- 2) 제품의 수입자는 해당 살생물제품의 제조국가와 제조회사를 함께 표시하여야 하며, 수입자와 판매자가 다를 경우에는 판매자의 상호 또는 성명, 주소 및 연락처를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예, [수입자 정보] (주) 코리아, 서울특별시 ○○○, 02-000-0000, 제조국가: 미국, 제조회사:아메리칸&코리안)

아. 어린이보호포장의 표시(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제품에 한함)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제품은 어린이보호포장을 적용하였음을 나타내는 안내문을 제품의 표시면 중 상표, 로고 등이 인쇄되어 있어 제품을 구매시 통상적으로 소비자에게 보여지는 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안내문의 표시는 그림1과 같이 분명히 보이는 충분한 폭의 적색 테두리(선 굵기 1 mm 이상) 안에 흰 배경 위의 적색 글씨(고딕체류)로 가운데에 위치하도록 한다. 이 경우 도안의 모양은 바로 세워진 직사각형 형태여야 하며, 표시면의 크기에 따라 가로, 세로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어린이보호포장

그림1: 어린이보호포장의 표시 도안

자.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성분)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은 살생물물질, 나노물질, 인체등유해성물질 및 중점관리물질 등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 중 승인통지서에 따라 제품 겉면 또는 포장 등에 기재하도록 하는 물질은 다음 구분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이때,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성분)'이라는 표시사항의 명칭은 '성분'으로 표시할 수 있다. {예, [성분] 살생물물질(에탄올, 40%), 나노물질(탄소나노튜브, 점도증진용), 인체등유해성물질(D-리모넨, 황산), 중점관리물질(자일렌)}

- 1) 살생물제품에 사용된 모든 살생물물질의 명칭^{주3)}과 배합비율(중량(%)) 단위로 제품내 최종 함량 표시)을 표시하여야 한다.
- 2) 살생물제품에 의도적으로 함유된 나노물질의 명칭^{주3)}을 사용목적 및 용도와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 3) 살생물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인체등유해성물질 및 중점관리물질 등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주3)}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화학물질의 기능을 부가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해당 화학물질이 살생물물질, 나노물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명칭이 이미 표시된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주3) 명칭은 법 및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거나 '화학물질정보시스템(NCIS)'에 등재된 국문물질명을 따른다. 본 고시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살생물물질, 나노물질, 인체등유해성물질 및 중점관리물질의 명칭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문 관용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

차. 제품 유해성 · 위험성

제품 유해성 · 위험성은 승인통지서에 따른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모든 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을 기준으로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화학물

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분류·표시된 살생물제
품의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1) 그림문자

그림문자는 살생물제품의 유해성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그림으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표시
하여야 하며, ‘해골과 X자형 뼈’, ‘부식성’, ‘호흡기 과민성’의 그림문
자가 사용된 경우에는 ‘감탄부호’를 함께 표시해서는 아니된다. 또한
‘호흡기과민성’ 그림문자와 ‘피부과민성’, ‘피부자극성’ 또는 ‘눈자극
성’의 그림문자가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흡기과민성’ 그림문자
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림문자의 크기는 최소면적이 1
cm² 이상이 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2) 신호어

신호어는 특정 유해 요소의 상대적 척도를 나타내는 문구로 「화학
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위험” 또는
“경고”를 눈에 띄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모든 해당하는 경
우에는 “위험”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3) 유해·위험문구

유해·위험문구는 살생물제품이 가진 유해성의 특징과 척도를 설명하
는 문구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
라 표시하여야 한다.

카. 사용량·용법

사용량·용법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별표2]의 예시
와 같이 표시사항의 명칭(사용량·용법)은 표시면과 다른 색의 글상자
안에 두꺼운 활자로 표시하거나 밑줄 또는 글자색을 변경하는 등의 눈

에 띄는 방법을 이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1) 승인통지서에 기재된 표준사용량과 사용방법을 표시하여야 한다.
- 2)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살생물제품 안전용기 및 포장에 관한 규정」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제품의 경우에는 사용방법에 ‘어린이보호포장용기의 여는 방법(필요시 닫는 방법 추가)’에 대한 문구를 눈에 띄게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시면이 아닌 어린이보호포장용기의 외면 덮개에 문구 또는 그림 등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타. 사용상 주의사항

사용상 주의사항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별표2]의 예시와 같이 표시사항의 명칭(사용상 주의사항)은 표시면과 다른 색의 글상자 안에 두꺼운 활자로 표시하거나 밑줄 또는 글자색을 변경하는 등의 눈에 띄는 방법을 이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1) 승인통지서에 기재된 사용상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며, 만약 표적생물체의 내성 발생의 가능성이 있다면 내성 또는 교차내성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 방안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 2) 살생물제품의 유형 및 특성 등에 따라 다음 표4와 같이 해당하는 문구를 눈에 띄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 특성상 표4의 문구가 해당제품에 적용되지 않음을 증명할 경우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표 4. 살생물제품의 유형 및 특성별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

유형 및 특성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
전 제품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 전에 표시사항을 반드시 읽고, 표시사항에 따라 제품을 사용할 것 ● 표시사항에 기재된 제품의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말 것 ● 내용물을 마시거나, 내용물이 눈 또는 피부에 닿을 경우 인체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으니 주의할 것 ● 사람 또는 동물(관상용 물고기, 조류 포함) 등에 직접 사용(분사)하지 말 것 ●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 시 충분히 환기할 것 ●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 제품의 용법과 달리 다른 제품과 섞어 사용할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으니 섞어 사용하지 말 것 ● 공기소독(연무 소독, 고압분사용 소독장비 활용하는 경우 포함)의 용도로 사용을 금지하오니, 물체 표면에만 사용할 것^{주4)} ● 피부, 음식물, 식기, 어린이의 장난감 또는 사료에 닿지 않도록 할 것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기와 결합된 뚜껑을 억지로 벗기지 말 것
일회성 제품 ^{주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봉 후 내용물을 즉시 사용할 것

주4) 제품의 제형이 분사형인 제품에 한하며, 공기 및 공간용으로 승인된 제품 제외

주5) 제품의 내용물이 일회성의 목적으로 사용되며 개봉 후 내용물 전부를 즉시 사용해야 하고 재밀폐가 불가능한 제품의 경우에 한함

3)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살생물제품 안전용기 및 포장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용기 강도 시험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리용기를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눈에 띄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가) 낙하 또는 취급 부주의로 인한 파손으로 내용물이 누출된 경우의 조치사항

4) 제품에 함유된 모든 성분의 배합비율을 기준으로 화학물안전원 고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분류·표시된 예방조치문구중 “예방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에 해당되는 문구가 7개 이상인 경우,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라 유해성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최대 6개까지 표시할 수 있다.

5) 2)와 3)의 본문 규정에도 불구하고 살생물제품에 해당하는 문구가 서로 중복되거나 유사한 경우 문장의 의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문구를 조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파. 응급처치

- 1) 승인통지서에 기재된 응급처치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하며 [별표2]의 예시와 같이 표시사항의 명칭(응급처치)은 표시면과 다른 색의 글상자 안에 두꺼운 활자로 표시하거나 밑줄 또는 글자색을 변경하는 등의 눈에 띄는 방법을 이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2) 살생물제품을 잘못 취급하거나 잘못하여 마셨을 경우의 응급처치방법은 제품에 함유된 모든 성분의 배합비율을 기준으로 화학물질안전원 고시「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에 따라 분류·표시된 예방조치문구 중 “대응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에 해당되는 문구가 서로 중복되거나 유사한 경우 문장의 의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문구를 조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하. 보관 및 폐기방법

- 1)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모든 성분의 배합비율을 기준으로 화학물질안전원 고시「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에 따라 분류·표시된 예방조치문구 중 “보관, 폐기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에 해당되는 문구가 서로 중복되거나 유사한 경우 문장의 의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문구를 조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 2) 해당 제품의 제형 및 사용방법 등의 특성이 반영된 문구 및 다음 문구 등을 추가 표시할 수 있다.
 - 가) “사용 후 잔여물이 용기에 들어있을 경우 새어 나오거나 흐르지 않게 밀봉하여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리시오.”

나) “사용 후 잔여물이 환경에 직접 배출되지 않도록 하시오.”

다) “사용 후 용기를 재사용하지 마시오.”

거. 승인번호


승인번호는 별표3에 따라 부여되어 승인통지서에 기재된 승인번호를 눈에 띄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예, 승인번호: 00000-000).

너. 제조번호

제조번호는 눈에 띄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때, 제품 겉면의 표시면에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위치에 제조번호의 표시 위치를 명시하거나, “별도표시” 등의 안내문구로 대신할 수 있다.

살생물제품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의 예시

1. 면적이 100 cm² 초과인 표시면에 표시하는 경우


<주표시면>	살생물제품 (살균제) 승인번호: 00000-000
	[제품명] [성분] [효과·효능] [사용대상자 및 사용범위]
	[사용량·용법]
	[제품 유해성·위험성]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사용상 주의사항]
	[응급처치]
	[보관 및 폐기방법]
	[중량·용량] [제조사 정보] ^{주2)}
	[유통기한] ^{주3)} [제조번호] ^{주3)}
어린이보호포장 ^{주1)}	

주1)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제품에 한함

주2) 제조자·수입자에 따른 선택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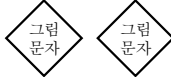
주3) 별도표시 가능

2. 면적이 50 ~ 100 cm²인 표시면에 표시하는 경우

<주표시면>	살생물제품 (살균제) [승인번호] 00000-000
	[제품명] [성분] [제품 유해성·위험성: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어린이보호포장 주4)	
	동봉된 문서를 확인할 것

주4)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제품에 한함

3. 면적이 50 cm² 미만인 표시면에 표시하는 경우

살생물제품 (살균제) [승인번호] 00000-000
[제품명]
어린이보호포장 주5)

동봉된 문서를 확인할 것

주5)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제품에 한함

[별표 3]

살생물제품 승인번호 부여기준

1. 승인번호의 구성

①			②			③		
0	0	1	2	3	-	0	0	1

2. 승인번호의 부여 방법

가. ① 살생물제품유형 코드

살생물제 품유형	코드	살생물제 품유형	코드
살균제	001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009
살조제	002	섬유·가죽류용 보존제	010
살서제	003	목재용 보존제	011
기타 척추동물 제거제	004	건축자재용 보존제	012
살충제	005	재료·장비용 보존제	013
기타 무척추동물 제거제	006	사체·박제용 보존제	014
기피제	007	선박·수중 시설용 오염방지제	015
제품보존용 보존제	008		

나. ② 승인 년도 끝자리 2자리 숫자

다. ③ 일련번호